

2025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예비청년창업자·초기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I 개요

□ 목적

- 녹색산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8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2.1.8~'25.1.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모집규모** : 총 30개사(명) 내외

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자원순환 또는 물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15 개사 내외
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15 개사 내외

- * 각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한개의 기업이 두개의 모집부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예비청년창업자: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협약기간내 창업 의무 부여)
- * 초기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가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인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
- 1) 예비청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5.10.30(약 7개월간)

II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환경 인·허가, 인·검증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지원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83백만원 내외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관·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상담(멘토링), 진단(컨설팅), 투자연계 등)

모집 부문	운영기관
자원순환 또는 물	로우파트너스
청정대기 또는 탄소저감 또는 일반환경	MYSC

※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10를 참고

※ 지원기업이 동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지원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

Ⅲ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5일(수) 18:00까지

□ **접수처**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https://ecosq.or.kr>)

□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및 가점과 관련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부여가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은 기존발급본 인정)
창업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구분	제출서류	
예비 청년 창업자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기보유종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④-2. (해당시)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④-3. (해당시)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덧붙임 4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덧붙임 9에 따른 확인서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⑦-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⑦-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선택서류	■ 가점 증빙서류(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 덧붙임 7과 관련한 증빙) ■ 청정대기·탄소저감·일반환경 분야(운영사 : MYSC) 신청시 선택제출서류 - 기업소개자료 또는 IR 자료
초기 청년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기보유종인 유형자산, 기근무종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법인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3. 창업기업확인서 ⑤ 덧붙임 4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덧붙임 9에 따른 확인서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⑥-1.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선택서류	■ 가점 증빙서류(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 덧붙임 7과 관련한 증빙) ■ 청정대기·탄소저감·일반환경 분야(운영사 : MYSC) 신청시 선택제출서류 - 기업소개자료 또는 IR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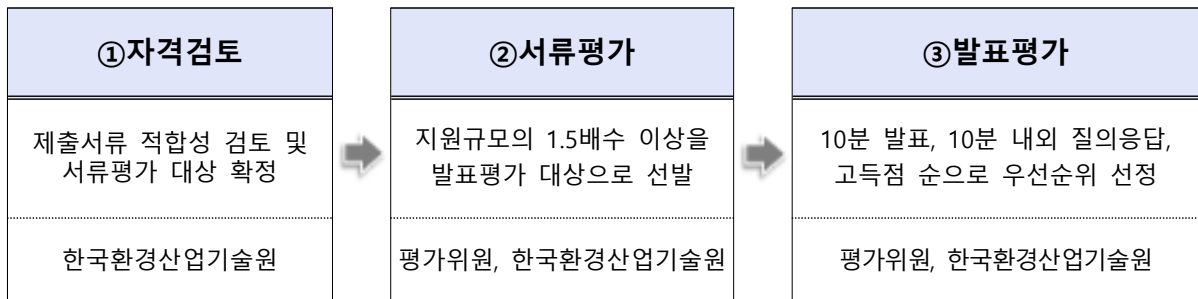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서 창업기업확인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관련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를 권장

IV

평가

□ 평가 절차

-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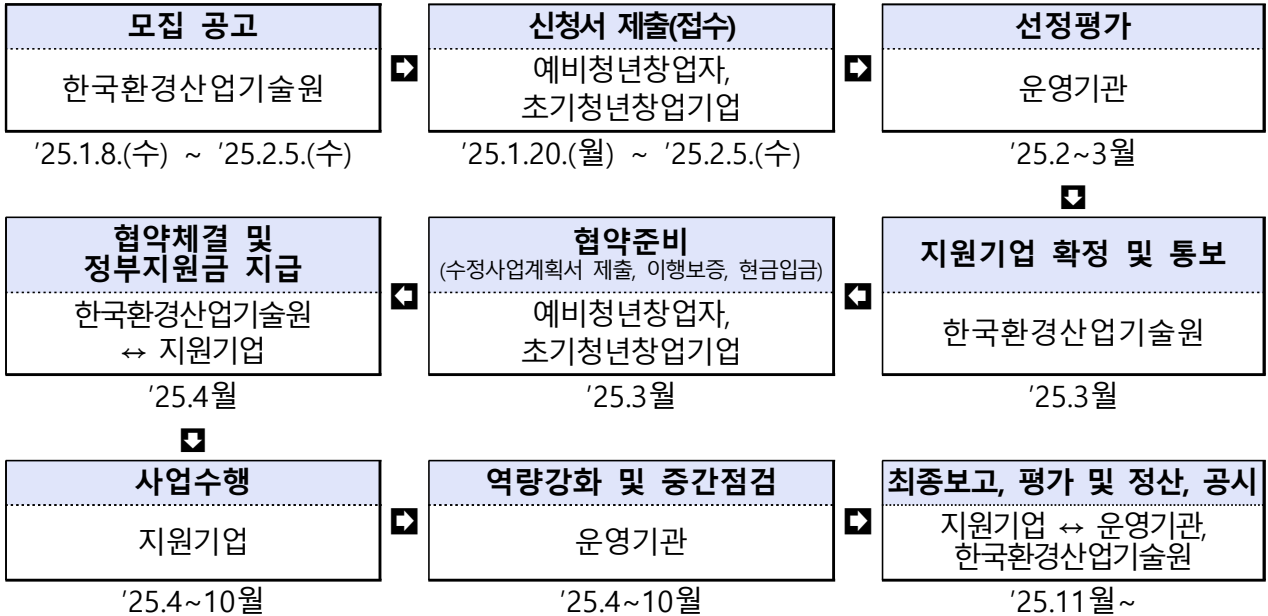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7) 참조

□ 최종 선정

- 신청기업의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V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

의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보조금법」 및 관계규정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사업비 구성에 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은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기준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 예비청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중, 전문기관과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성과 검토 기준 : 본 공고문 덧붙임 14(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등

VII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기청년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가능하고, 인건비 집행과 관련한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초기청년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팀원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2년 이내인 업체, 프리랜서,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 종목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시제품과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당해연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과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및 외주 용역비 집행 불가

□ 평가, 선정,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청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운영기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에 고지하고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법」 및 관계규정,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및 관계규정,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지원과제 선정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를 진행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보조금법」 및 관계규정,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집행, 정산, 공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동 사업 관련 예산사정, 관련법 및 사업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와 3회를 초과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집행건은 불인정될 수 있음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 필수
- 지원기업이 임직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사업비 교부는 협약기간내에 2회 이상 분할 교부할 수 있음

- 2025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
 - 전화 문의 : 042-867-8813(로우파트너스), 02-532-1237(MYSC)
032-540-2132, 2145, 2138, 2144(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메일 문의 : gong10123@rowe.kr(로우파트너스),
ema.info.green@gmail.com(MYSC)
ecostartup3@keiti.re.kr(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대표 누리집 : <https://ecosq.or.kr>

-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서(지원기업)
 3.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계획서(지원기업)
 4. 신청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 신청 제외 대상
 6. 지원 세부 사항(예시)
 7. 평가 및 가점 기준
 8. 지원 대상 참고 사항
 9. 확인서 양식
 10. 운영기관 명단
 11.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끝.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창·휴·폐업일, 매출액, 수출액, 고용, 원천징수소득,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수집·이용 목적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보유·이용 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주소, 전화
수집·이용 목적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신청 및 지원
보유·이용 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p>정부부처(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지자체(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남구,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전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유성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강서구, 금정구, 부산광역시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울특별시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연수구, 전라남도, 나주시, 순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진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환경산업협회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로우파트너스, MSC</p>
제공목적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관리 등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제공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신청서(지원기업 부문)

과 제 명	<input type="checkbox"/> 예비청년창업자 / <input type="checkbox"/> 초기청년창업기업 (택1 필수)			
과제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주소			
창업계획 (예정사항)	설립(예정)일자			
	주생산품·서비스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과제수행예정지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input type="checkbox"/>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예비청년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체재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대표자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를 지원받은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권리이전 포함)한 경우에도 동 사업 참여 불가))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창업계획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예비청년창업자]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 4. [초기청년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5.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예비창업자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6. 가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특허, 수상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유사성	
성명	생년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과제명 / 아이템	지원시작일	지원종료일	지원금액		
홍길동	ymmmd d		000-00-0000 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 d	yy-mm-d 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 용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품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재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 ₂ 온실가스 저감	Non-CO ₂ 온실가스(N ₂ O, CH ₄ ,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에너지 전환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일반환경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계획서(지원기업 부문)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예비창업자는 이름만	대표자 생년월일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 그림설명 2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 그림설명 4 >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p>과제목표 및 추진일정</p>	<p>※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p> <p>.</p> <p>.</p> <p>.</p> <p>.</p>
<p>기술성</p>	<p>※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p> <p>.</p> <p>.</p> <p>.</p>
<p>시장성</p>	<p>※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령 및 조항</p> <p>.</p> <p>.</p> <p>.</p>
<p>사업비</p>	<p>※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2,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p>
<p>기대효과</p>	<p>※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p> <p>.</p> <p>.</p> <p>.</p>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2. 기술성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주 소비자 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령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4. 사업비

- ※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형자산 등의 비목으로 구성
-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706천원, 0.5~1억 811천원, 1~2억 969천원, 2억이상 1,159천원)
- ※ 기타운영비(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수
- ※ 컴퓨터, 범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00%
인건비	보수	대표자 인건비 1인*6개월*4,000,000원*참여율 30%			7,200,000	00%
인건비	일용임금	과제 참여 인력 5인*10,000원*5일	2,500,000			00%
운영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비 1식*2,000,000원		2,000,000		
운영비	재료비	시금형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00%
운영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교육 및 장비 3,000,000원* 1식	3,000,000			00%
무형자산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00%
...
합 계			21,100,000	2,000,000	7,2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유형자산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보수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 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원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덧붙임 4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예비청년창업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인 (예비청년창업자 이름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으로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해당시)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해당시)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4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덧붙임 9에 따른 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	(해당시)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⑧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 서류	■ 가점 증빙서류(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 덧붙임 7과 관련한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청정대기탄소저감일반환경 분야(운영사: MSC) 신청시 선택제출서류 - 기업소개자료 또는 IR 자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제28조(협약의 해약), 제6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00.00

(예비청년창업자 이름 기재) (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초기청년창업기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인 (초기청년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붙임의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번호	신청서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1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③-2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1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④-3	창업기업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⑤	덧붙임 4에 따른 자가진단리스트, 덧붙임 9에 따른 확인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1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⑥-2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⑦	<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선택 서류	▪ 가점 증빙서류(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될 수 있음, 덧붙임 7과 관련한 증빙)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 청정대기·탄소저감·일반환경 분야(운영사: MISO) 신청시 선택제출서류 - 기업소개자료 또는 IR 자료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제28조(협약의 해약), 제6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00.00

(초기청년창업기업 회사명 기재) (인)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 이력 조회 등 포함)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또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지원을 받은 경우(대표자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를 지원받은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권리이전 포함)한 경우에도 동 사업 참여 불가))
-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을 동시에 신청·선정된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덧붙임 6 지원 세부 사항(예시)

지원구분	지원 세부 사항																		
예비창업자 창업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창업 자금 최대 83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물 30% 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총 사업비 구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44 674 667 757"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 data-bbox="673 674 1401 712">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 data-bbox="673 721 1031 757">현금</th> <th data-bbox="1037 721 1401 757">현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766 667 801">총 사업비의 70% 이하</td> <td data-bbox="673 766 1031 801" style="text-align: center;">-</td> <td data-bbox="1037 766 1401 801">총 사업비의 30% 이상</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비 구성 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44 875 673 958" rowspan="2">총사업비</th> <th data-bbox="679 875 865 958"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data-bbox="871 875 1401 958">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 data-bbox="871 920 1401 958">현물</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967 673 1122" style="text-align: center;">약 11,500만원</td> <td data-bbox="679 967 865 1122" style="text-align: center;">8,000만원</td> <td data-bbox="871 967 1401 1122" style="text-align: center;">3,500만원(30%)</td> </tr> <tr> <td data-bbox="344 1131 673 1167"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data-bbox="679 1131 865 1167" style="text-align: center;">70% 이하</td> <td data-bbox="871 1131 1401 1167" style="text-align: center;">30% 이상</td> </tr> </tbody> </table>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물	약 11,500만원	8,000만원	3,500만원(30%)	100%	70% 이하	30% 이상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물																	
약 11,500만원	8,000만원	3,500만원(30%)																	
100%	70% 이하	30% 이상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상담(멘토링), 진단(컨설팅), 투자연계 등)																		

【참고】 사업비 비목

지원과제 비목별 정의

1. 비목별 정의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p>1. 보수</p> <p>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시제품 제작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율(해당년도에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계상 금액을 연 급여로 나눈 것)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및 4대보험 가입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p> <p>※ 인건비 최초 사용승인 신청 시, 최근 급여명세서(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신분증·통장 사본, 인력별 인건비 계상율(타부처 사업 등 계상율 설명 필수) 설명자료,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p> <p>※ 신규 채용자의 경우 급여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객관적 산정근거 제출(최근 소득, 이력서, 인력별 인건비 계상율(타부처 사업 등 계상율 설명 필수) 설명자료 등, 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산정 시 제외)</p>
	기타직보수 (02)	<p>1. 기타직보수</p> <p>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단기간 고용하여 지급하는 인건비</p> <p>※ 단기 고용(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으로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고용한 인력</p> <p>※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자격증 등 전문성과 관련된 서류 제출 필수</p> <p>※ '1.보수'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수</p>
	일용임금(04)	<p>1. 일용임금</p> <p>사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p> <p>※ 휴일 근무는 집행 불가</p> <p>※ 협약기간 중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가 5일을 초과하면 집행 불가</p> <p>※ 협약기간 중 5명 이상 활용 불가</p> <p>※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제출 필수</p>
	기타사항	<p>※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고,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는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음</p> <p>※ 타부처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율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포함)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환수</p>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p>1.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p> <p>-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소모성의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협약기간 내 100만원 이하 집행 가능)</p> <p>2. 인쇄비</p> <p>-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p> <p>3. 운송비</p> <p>- 물품의 보관·운송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p>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p>4. 업무위탁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회의참석자문비 및 전문가 자문료 <p>5. 전문가 자문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기타소득)(1일 1회기준 최대 40만원 내 지급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동일인에게 2회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p>6.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p> <p>7. 광고선전비</p> <p>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탈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앱 스토어 등록비, 배너광고 등 온라인 홍보비, 일간지 등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 포함)</p> <p>※ 해당 과제 및 지원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p> <p>8. 지급수수료</p> <p>시험분석비, 검·인증비, 운반비, 차량 렌트비(장비 운송에 한함), 보관료, 회계·세무 기장료(법인에 한함),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플랫폼 수수료</p> <p>9. 교육훈련비</p> <p>대표자와 지원사업 참여자가 사업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경영교육 이수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 학회/세미나 등 전시회 참가비 등</p>
	공공요금 및 제세 (02)	<p>1. 공공요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임차료 (07)	<p>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p> <p>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p> <p>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p> <p>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p> <p>5.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p> <p>6. 기자재 및 시설 임차료</p> <p>※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 및 보관, 서버, 현장 테스트 및 설치 시 필요한 장비·시설의 협약기간내 이용하는 임차에 관한 것만 해당(구매불가)</p>
	재료비 (11)	<p>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p>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p> <p>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p> <p>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p> <p>※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p>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양산, 판매 및 영업활동을 위한 재료비 집행 불가
	복리후생비 (12)	1. 4대보험의 사업자부담금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창업활동 촉진(컨설팅 포함)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 시제품 설치, 개선, 운반 목적 외의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 용역비는 집행 불가
	기타운영비 (16)	1.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기타 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치사항에 필요한 경비 ※ 지원금액중 일부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수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각 기관 지침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기타 제경비 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대가.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프린터, 가전제품, 소모성 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집행 불가, 민간부담금(현물)로만 집행 가능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협약기간 이전에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 기간내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활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만 계상 가능 1. 대규모 기계, 기구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차량은 불가) 2.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차량은 불가)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부속품 포함)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등)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특허 등 등록에 따른 성공보수는 민간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기술이전 비용(비영리기관 및 산학협력단과의 기술이전만 인정) ※ 지식재산권의 경우, 관리지침 제55조 ③ 및 ④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예비창업자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목적)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의 집행) 제11항에 따라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계약업무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절차 및 내용)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는 2천만원 이상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건과 관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 후에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여야 함(단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 부정수급 공모 및 가격 부풀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비교견적서 등 첨부
 - ** 계약 관련 내용은 1개월 주기로 모아서 온라인에 게시

4. 창업기업의 계약업무 세부사항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의 집행) 참고

덧붙임 7 평가 및 가점 기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 서류평가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소 계		5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10점
소 계		20점
총 계		100점

2. 발표평가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가점기준>

구분	가 점 내 용	점수	증빙서류
1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인증서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2	환경산업 분야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보유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출원은 가점인정 제외, 등록만 가점인정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빙서류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 실시권 보유		
3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서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4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중인 기업에 한함	1점	입주계약서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 증빙자료를 정해진 방법대로 제출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덧붙임 8 지원 대상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사목의 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운반·공급·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운반·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늦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업신청/접수 관련 귀책사유는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에 있으며, 발급기관·제출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신청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 제출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확 인 서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의 신청기업인 (**예비청년창업자 이름 또는 초기 청년창업기업 회사명 기재**)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제14조(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호	신청자격의 제한 해당사항	예	아니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4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5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6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7	제6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8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지원기업에 한정)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9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또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지원기업에 한정하며, 대표자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를 지원받은 후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권리이전 포함)한 경우에도 동 사업 참여 불가)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10	당해연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을 동시에 신청·선정된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11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12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시 체크	해당시 체크

또한 향후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확인서(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 등 전체)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 제28조(협약의 해약), 제62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00.00

(**예비청년창업자 이름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 대표명 기재**) (인)

□ 운영기관 개요(자원순환물 분야)

- (기업명) (주)로우파트너스 (대표자 : 황태형)
- (모집분야) 자원순환, 물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운영사 보유한 운용펀드 규모 283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TIPS 운영사로서 직접투자 이후 TIPS 추천 및 연계 가능
 -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산업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 회사로 지정되어 기술기반의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회의 등이 가능한 자체 보육공간 (인큐베이팅) 및 입주공간 보유

□ 프로그램 소개

- (녹색창업교육)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과정 및 공통 교육 등
 -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
- (맞춤형 특화컨설팅) 기업진단, 니즈 기반 맞춤형 컨설팅 등
 - 1:1 현장인터뷰 방식으로 기업의 역량진단 Tool을 적용하여, 사업성 및 시장성, 기술역량 등의 기업진단을 진단
 -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방향을 설계하고, 특화 분야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운영
-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 협업, 연계 등
 - 대·중견기업 등과의 협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현장맞업(매칭)을 진행하고, 기술실증(테스트베드) 및 협업에 필요한 자문 및 서비스 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투자컨설팅, IR피칭-스킬업 등
 - 참가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IR 자료 컨설팅, 피칭스킬업 등의 전문가 매칭 및 내부 멘토링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

- (데모데이) Closed IR, 데모데이 등
 - 투자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진행하고 실질적 투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IR과 데모데이를 진행
- (직접투자 및 연계) 기술금융 및 R&D 연계, TIPS 프로그램 활용
 - 참여기업의 자금확보 및 글로벌 유니콘 성장지원을 위하여 R&D, 기술금융, TIPS 프로그램 연계지원
 -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약 총액 10억원 직접투자 예정
- (글로벌 진출지원) 해외 박람회 진출 지원, 해외 바이어 미팅 연계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운용펀드 283.2억원
- (기투자기업) 총 90개사
- (기투자 우수사례) 대표 우수사례 2개사

<리베이션>	<스텔라비전>
	
<p>□ 기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 친환경 패키지 원스톱 개발 솔루션 ○(투자일자) '24.11.(프리 A Bridge-A 투자) 	<p>□ 기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 초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스마트 하천 관리 시스템 ○(투자일자) '24년 프리A 투자

□ 문의처

- (전화번호) 042-867-8813
- (이 메 일) gong10123@rowe.kr

□ **운영기관 개요(청정대기·탄소저감·일반환경 분야)**

- (기업명) (주)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자 : 김 정 태)
- (모집분야) 탄소저감, 청정대기, 일반환경
- (운영사가 보유한 강점)
 - 안정적인 인력구조와 AUM 911.5억원(2024년 11월 기준)을 기반으로 다년간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하며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의 전문성을 보유
 - TIPS 및 LIPS 운용사로 기업의 단계에 따라 직접 투자와 연계하여 다양한 혼합금융 방식의 지원 가능

MYSC의 혼합금융을 통한 스타트업 혁신 성장 고도화 단계	
◎ OI / IPO / M&A	직접투자 이후 후속투자 및 사후관리를 통해 대기업 연계,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예비 유니콘 기업 대상 전문가와 함께 M&A 및 IPO 연계
◎ R&D 자금 (*TIPS, LIPS)	스타트업 분야 및 소재지에 따라 TIPS, LIPS 운영사인 MYSC 투자 이후 추천을 통해 정부 R&D 지원금/용자 확보 가능
◎ 지분투자 (Equity)	MYSC 직접투자 및 MYSC의 VC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속투자 연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p>MYSC 직접 투자 + VC 후속 투자 펀드</p> </div>
◎ 용자/보증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기보엔젤파트너스로 기보보증의 패스트트랙 추천권 보유 • 신용보증기금 U-Connect 파트너사이자 Start-up NEST 프로그램 운영사
◎ 창업 지원금 (Grant)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지원금 지급

혼합금융을 통한 혁신 성장 고도화 단계

- 서울시 성수동에 스타트업 시장검증 목적의 공유 오피스 매리히어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선발 이후 입주 시 멤버십 혜택 가격으로 로컬 기업의 서울 오피스 공간/공용 공간/회의실 지원 가능



공유오피스, MERRY HERE 전경

□ 프로그램 소개



- (사전설명회) 구체적인 신청 안내 및 상담창구 ‘사전사업설명회’
 - 사전 신청 기업 대상 프로그램/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구성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의 어려움 해소의 사전 설명회 진행
- (전담멘토 멘토링) 맞춤형 KPI 수립 및 성과관리 ‘스크럼&스크랩 미팅’
 - 현황 진단 및 KPI 수립, 과제 성과관리 및 자원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정기 성과관리 스크럼&스크랩 미팅 진행
- (녹색창업교육) 녹색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교육 ‘MYSClass’
 - MYSClass 창업 일반 주제(안): 혼합금융/비즈니스/지속가능성/경영안정성
 - MYSClass 녹색창업 특화 주제(안): 환경비즈니스동향/환경인증 등
- (맞춤형 지원) 분야 전문가와의 1:1 ‘오피스아워, 맞춤형 지원’
 - 경영 실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의 운영사 내외부 자문 연계
 - IR 및 홍보물 디자인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
- (네트워킹)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관계자본 형성 ‘네트워킹’
 - 스타트업 밋업 및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 상시 투자사 밋업
 - 비정기 창업가 밋업 및 세미나
 - 데모데이, 성과공유회, 컨퍼런스 우수사례 소개 등

□ 기투자이력 및 성과

- (투자자산) 본계정 14.8억원, 운용펀드 911.5억원
- (기투자기업) 총 177개사
- (기투자기업 사례) 총 3개사
 - * '24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중 직접투자 사례

어글리랩

uglee lab.

□ 기업내용

- (사업모델)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모델로 쓰레기 선별과 세척, 재활용 등 자원순환 스타트업
- (투자일자) '24년 Series A 투자

오브제바이오



ObjetBio
Agricultural Corporation

□ 기업내용

- (사업모델) 미생물로 식물/농작물 생육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바이오 스타트업
- (투자일자) '24년 Seed 투자

탄소중립연구원



□ 기업내용

- (사업모델) 기업용 탄소배출량 통합관리 및 제품 LCA 산정 솔루션
- (투자일자) '24년 Pre-A 투자

□ 문의처

- (전화번호) 02-532-1237
- (이 메 일) ema.info.green@gmail.com

덧붙임 11 정량적 목표 성과 인정 범위

□ 정량적 목표 관련 유의사항

- 정량적 목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온라인 시스템에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 사업계획서와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된 목표가 다를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목표로 검토 및 반영
- 모든 성과는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시 제출된 정량적 목표는 최종평가 시에 반영
- 성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비 정산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과 인정 범위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공급가액 합계
 - 기간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통계 또는 합계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 공급가액 합계(국세청홈택스 발급, PDF 출력본)
 -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등 발급),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 기타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매출장 등)는 인정되지 않음
- 신규고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 발급일시가 협약종료일 이후여야 함

○ 투자유치

- 투자계약서 신주 납입 총액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주식
- 기타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
 - ※ 기술 및 현물 출자, 정부지원사업, 민간기업 업무협약 및 지원프로그램, 기술·신용 보증기금 보증, 용자 등은 불인정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투자"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 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특허출원

- 출원번호통지서 및 서지사항
 - ※ 서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정보 기재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
 - ※ 특허결정서, 발명자가 수혜기업이 아닌 단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이전은 불인정
 - ※ 「에코스타트업 관리지침」 제49조(성과물의 귀속)에 따른 출원인 인정 범위

지원분야	사업자등록 형태	성과 인정 여부	
		출원인이 지원기업	출원인이 대표자 개인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성장)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은 특허출원 성과로 불인정(기타 성과로는 인정)

○ 기타

- PCT 출원서, 해외특허 출원서 등
- 디자인, 상표 출원서 또는 등록증
- 과제 관련 인증에 대한 인증서
- 기타 성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음)